

[부록 1]

올바른 분리배출 영상자료 참고 사이트[환경부]

영상 제목	사이트 주소	QR코드
[캠페인 송] 나우와 함께 시작해! 공동주택, 단독주택도 시작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캠페인 송~!	https://han.gl/BBGZHP	
페트병으로 실 만든다! 투명페트병의 여행	https://han.gl/JsibAm	
알쏭달쏭? 헛갈리는 쓰레기 분리배출 깨알상식!	https://han.gl/reWeii	
[일상 속 분리배출] 폐가전 제품 이렇게 버려라!	https://han.gl/GadnyF	
[일상 속 분리배출] 폐가전 제품 이렇게 버려라!	https://han.gl/zOhGNq	
[일상 속 분리배출] 올바른 분리배출 4가지 방법!	https://han.gl/cPynBN	
[일상 속 분리배출] 알쏭달쏭 헛갈리는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 일분만 보시고 가실게요~	https://han.gl/LStWRb	
[일상 속 분리배출] 투명페트병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꼭 기억해주세요	https://han.gl/zdNLiC	
[일상 속 분리배출] 투명페트병 수거함에는 생수와 음료 투명페트병만 넣어주세요!	https://han.gl/jTFxSB	

[부록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영상자료 참고 사이트(환경부)

영상 제목	사이트 주소	QR코드
월간환경부 7월호 -1회용품 쓰레기 줄이기	https://han.gl/FWShIz	
당신의 손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건강한 지구를 위해!	https://han.gl/ipzrDX	
[자원순환 공익광고] 1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https://han.gl/KGeAkR	
오늘부터 쉽니다. -플라스틱 올림-	https://han.gl/dLHqGr	
사생결단 - EP01.지워지지 않는 흔적 플라스틱	https://han.gl/LnuxNW	
하루 일상 속 플라스틱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그린생활습관	https://han.gl/dbxORu	
Plastic is forever (플라스틱은 영원하다)	https://han.gl/VjQyJO	
월간환경부 5월호 - 바다거북과 플라스틱 기획전	https://han.gl/ZfaeDP	
안 쓰고 산다 ⑤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여행	https://han.gl/ZKchmJ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자료(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운다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워주세요.



헹군다

이물질이나 음식물은
뉘거나 헹궈주세요.

섞지 않는다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구분해
분리수거함에 버려주세요.



분리한다

라벨 등이 다른 재질일 경우
제거해주세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자료(환경부)

오늘,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에서는
머그컵

밖에서는
텀블러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하며 1회용 병입수(일회용 페트(PET)병에 담겨져 제조·판매되는 먹는 물) 등을 포함한다.
3.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4.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 또는 학교장은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 배출(이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이라 한다)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감,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2.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3. 1회용 우산 비닐 커버의 사용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교육감,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 및 학교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관, 학교 및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지원) ① 학교장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관련 단체·기관과 연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표의 활용)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관한 지표를 마련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